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319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가. 집합투자업 인가

1. 상 호 : 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

2. 인가업무

인가업무 단위	금융투자업의 종류	금융투자상품의 범위	투자자의 유형
3-11-1	집합투자업	증권 ·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

^{※「}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[별표 1]

3. 인가조건

-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
- 다만,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,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, 금융위원회가 최대 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4. 인 가 일 : 2022. 9. 7.

나.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

1. 상 호 : 동서울농업협동조합, 춘천농업협동조합, 중울산농업협동조합, 상주농업협동조합, 광양농업협동조합

2. 인가업무

인가업무 단위	금융투자업의 종류	금융투자상품의 범위	투자자의 유형
11-13-1	투자매매업 (인수제외)	집합투자증권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
2-13-1	투자중개업	집합투자증권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

^{※「}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[별표 1]

3. 인가조건

- 11-13-1의 경우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확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
- 2-13-1의 경우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채무증권인 집합투자 기구(단,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100분의 30 이하)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
- 4. 인 가 일 : 2022. 9. 7.